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70
----------	--------

발의년월일 : 1998년 5월 9일

발 의 자 : 제20회 파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I 수정이유

자문기구의 근무취지와 배치되는 사안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II 수정주요골자

-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
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으로 함.(안 제2조 제3항)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경우 관계공무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자문기구의 근본
① ~ ②생략		① ~ ②원안과 같음			취지와 배치되는
③ 생략		③ 원안과 같음			사안에 대한 단서
(단서 신설)		<u>이경우 관계공무원의 수는 신설</u>			
		<u>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u>			
		<u>위원수의 반수 미만으로 한</u>			
		<u>다.</u>			
1 ~ 4(생략)		1 ~ 4(원안과 같음)			